

서울교육대학교와 재외동포청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

서울교육대학교와 재외동포청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재외 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재외동포들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재외 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개선 등에 대하여 서울교육대학교와 재외동포청 (이하 '양 기관' 이라 한다)의 상호 교류와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주요 협력내용) 양 기관은 제1조에 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상호 협력함은 물론 이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.

1. 해외 한글학교 역량 강화를 위한 한글 교육 등 동포교육 발전
2.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 인식 개선과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적 협력 및 프로그램 개발
3. 기타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 간의 유대감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업

제3조(협약 이행에 따른 세부사항) 본 협약에 따른 세부 사항은 양 기관이 실무회의 등을 통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4조(협의조정)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.

제5조(비밀엄수) 본 협정과 관련해 습득한 상대 기관의 비밀 사항은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.

제6조(협약의 변경 및 해지)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협약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. 단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이 해지된다.

1. 양 기관이 협약의 해지를 합의하였을 경우
2. 어느 한 기관의 협약 위반으로 다른 기관이 협약의 폐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
3. 단, 이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이미 합의하여 상호 협력이 진행 중인 사항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제7조(효력발생) 본 협약서의 효력은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, 양 기관의 협의에 의해 해지 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2024. 11. 11.



서울교육대학교
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

서울교육대학교
총장 장신호

장신호



재외동포청

재외동포청
청장 이상덕

이상덕